



문서번호 사법 2015-0602

수 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성은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국정원의 법관 등 공직임용 예정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

날 짜 2015. 6. 9. (총 3쪽, 별첨자료 제외)

국정원의 법관 등 공직임용 예정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

.....

1.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 또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직접 만나 국가안보와 전혀 상관없는 사회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안에 대해 귀 의원이 국정원의 신원조사 활동을 중단시키고, 국정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한 보안업무규정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기관인 대법원에도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토록 규정한 대법원규칙 '제66조 제1항'을 삭제하고, 법원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신원조사 업무를 진행하도록 요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국정원이 법관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공직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등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신원조사권을 국정원에게 부여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같은 규정 자체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국정원법 제3조(임무) 2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임용 예정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성을 등을 조사하기 위한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신원조사 규정은 국정원법 제3조 2항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 행위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정원에게 맡겨진 것이기에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2003년에 참여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한 사건에 대해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별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국정원이 수행토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정원은 외부감시와 견제,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곳이어서 신원조사 활동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차별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성실성이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성품을 파악하고 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과거 존재하던 중앙인사위원회나 공무원 채용 담당 기관과 공직윤리 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범죄이력이나 탈세 등의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경찰청, 또는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보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맡긴 보안업무규정 33조와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5. 또한,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 65조(신원조사)와 66조(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행정기관인 국정원으로 하여금 법관의 임용 과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상의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내부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법원이 법관 임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28일 참여연대는 대법원에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서를 동봉합니다.

6.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주길 바라며,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을 폐지하는데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끝.

▣ 별첨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문
2. 대법원의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참여연대 공개질의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

